

【특집】

## 적극적 평화로서의 공존의 가치

천경호 (서울대학교)

### 국문요약

공존은 서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함께 생활의 시공간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생각하듯, 공존은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공존은 기회부여, 대표성 보장, 상호 이해와 존중, 협력과 교류 등의 여러 측면과 층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권력공유나 자치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집단 간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장치와 구조의 예이다. 의미 있는 공존을 위해서는 합의와 협정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 뿐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의식적인 부분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주의자와 합병주의자 간의 오랜 대립으로 잘 알려진 북아일랜드의 갈등상황은 벨파스트 협정에 의해 무력충돌이 일단락되고 권력공유를 통한 공존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나, 아직도 구교와 신교, 민족주의자와 합병주의자들은 철조망과 콘크리트 벽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거주지에서 서로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존의 여러 형태를 일련의 스펙트럼으로 볼 때, 이상적인 수준의 평화적 공존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공존의 진정한 가치는 그 지향점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실천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공존, 문화상대주의, 통합, 권력공유, 북아일랜드 갈등

## I. 들어가며

공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하나 이상의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 주체로서의 “나”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개체 혹은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상태를 공존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공존은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적 조건이고 숙명으로까지 보인다. 하지만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로서의 공존을 말할 때에는, 단순히 함께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최소한 서로에게 당장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가할 의도를 보이지 않고 비폭력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가리킨다.<sup>1)</sup>

인간 활동의 사회적 영역을 생각할 때, 공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집단 사이의 다름 때문이다. 언어, 역사적 기억, 종교, 경제활동 양식, 문화적 전통 등 집단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실로 다양하다. 함께 같은 곳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공유해온 집단 간에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넓어질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종족이나 민족으로 부르는 범주 내의 구성원들끼리는 종종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들이 한 공간을 더불어 점유하며 서로 간에 갈등양상을 보일 때, 공존이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다름을 드러내는 집단 간에 이해와 존중, 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오해와 차별, 나아가 혐오, 배제까지 일어날 수 있으며, 감정적인 수준에서의 적대감이 물리적 폭력과 인명살상으로까지 이

<sup>1)</sup> Eugene Weiner, ed., *The Handbook of Interethnic Coexistence*, (New York: Continuum, 1998).

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의 실상에서 충분히 보아오고 있다.

공존이 문제가 되는 서로 다른 집단 간에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더해 사례마다 상당 기간 축적되어온 복잡한 역사적 배경도 문제를 심화시키는 데 한몫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행으로서의 공존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보다, 갈등과 폭력의 대척점에서 화해와 평화를 생각할 때 공존이라는 개념이 갖는 가치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공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접근방식 및 제도적, 인식적 조건을 정리하고 공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들어 공존의 현실적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 II. “우리” vs. “그들” :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상대주의

공존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에 앞서 우선 공존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로 인식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존을 서로 다른 집단이 삶의 공간을 공유하며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서로 다름을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 영역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의 차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본다.

인류학에서는 문화를 “한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지식, 관습, 의례, 전통, 신앙 등 인간사회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의 총체”로 정의한다.<sup>2)</sup>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는 세계관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나”와 “나 아닌 저들”을 구분하게끔 하는 정체성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나의 정체성이란 홀로 있을 때는 가늠하기 어려우며,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대비되는 차이에 근거하여 “나”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 다름, 혹은 같음을 가늠하게 되는 기준들이 상당 부분 문화라는 범주에 포함된다.

누군가를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의 기준은 다름 아닌 “나”이고 “나의 것”이다.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 나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 나와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 나와 다른 신을 믿는 사람, 나와 다른 옷을 입는 사람 등 나를 중심에 두고 볼 때 “나와는 다름”이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친밀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낯설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이보다 강한 부정적 감정, 예를 들어 거부감, 혐오감, 적대감 등을 느끼고 이를 표출할 때이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과 행동은 내가 나와 다른 그 무엇인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 즉 불확실성에 기반한 공포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sup>3)</sup>

나를 중심에 두고 나와는 다른 집단 및 문화에 대해 열등하거나 미개하거나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자문화중심주의라고 한다. 나

2) M. Ann Brown, “Anthropology and Peacebuilding,” In Roger Mac Ginty, ed., *Routledge Handbook of Peacebuilding*,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3), p. 137.

3) 이에 대한 논의는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2)의 6장을 참조할 것.

와 나의 문화를 정상적이고 합리적, 이성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타인과 그들의 문화를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태도는 다른 집단과 어울려 살아갈 때 가장 위해가 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sup>4)</sup> 나와는 다른 생활양식에 대해 낯설음을 느끼는 것은 전술하였다시피 누구에게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나, 이러한 일차적인 낯설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하여 상대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자문화중심적 태도가 만연한다면 공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의 구성 자체가 어려워진다.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태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공존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5)</sup>

자문화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그 극복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문화상대주의이다. 문화상대주의의 핵심은 모든 문화는 그 문화가 지속되어온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란 특정 인간집단이 살아 온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전승되어온 것이므로, 그 문화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화상대주의의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 중 하나가 “문화구성원의 시각으로(from native’s point of view)” 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집단의 생활양식이 일견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맥락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4) Ken Booth, “Step towards Stable Peace in Europe: A Theory and Practice of Coexistence,” *International Affairs*, vol. 66, no. 1 (1990), p. 21.

5) Louis Kriesberg, “Changing Forms of Coexistence,” In Mohammed Abu-Nimer, ed., *Reconciliation, Justice, and Coexistence: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Lexington Books, 2001), p. 48.

물론 문화상대주의는 이론에서보다 실제에서 적용되기 훨씬 어려운 가치이다. 누구나 원론적으로는 모든 문화가 존중받아야한다는 생각에 쉽게 동의하기도 하나, 막상 자신이 현실에서 다른 문화와 부딪혀 갈등을 겪게 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각을 견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 간의 공존을 이야기하려면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이 기본 토대가 되어야함은 분명하지만, 현실에서 문화상대주의를 적용할 때 그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인권, 윤리, 도덕과 같은 일견 절대적 가치로 보이는 개념과 문화를 연관시킬 때 다양한 논의와 논쟁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절대적 문화상대주의와 비판적 문화상대주의로 구분되는 두 입장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sup>6)</sup>

## 1. 비판적 문화상대주의

비판적 문화상대주의(Critical Cultural Relativism)는 문화상대주의의 기본적 입장은 견지하되, 모든 문화의 가치와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것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여성 성기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Female Genital Cutting, FGC)를 예로 들어보자.<sup>7)</sup> 여성성기절제는 4-12세 정도의 여아에게 주로 행해지는데, 생식기의 일부, 혹은

6) 문화상대주의와 윤리, 도덕, 인권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Xiaorong Li, "A Cultural Critique of Cultural Relativism,"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66, no.1, (2007), pp. 151-172.

7) FGM/FGC를 "여성할례"로 번역하기도 하나, 유태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남성 할례와 동등하게 놓고 비교하기에는 의례적 의미나 물리적 행위에서 차이가 크며 FGM/FGC가 대상자들에게 가지는 위해적 측면이 희석될 수 있기에 이 글에서는 원어의 직역어인 "여성성기절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전체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성 성기절제가 문제가 되는 것 중 한 가지는, 이 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유소아이며 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된다는 점이다. 여성 성기절제는 주로 나이든 여성이나 남성에 의해 행해지는데, 소독과 마취 등이 매우 불량하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면도날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높다. 실제로 다량의 출혈로 인한 쇼크사와 감염으로 인한 사망도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 성기절제 과정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 여성성기절제는 절제와 봉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체 괴사와 변형 등 여러 부작용 및 합병증의 소지가 있으며, 후에 결혼 초야에 남편이 봉합된 성기를 다시 개방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실제 인터뷰들을 보면 부작용으로 평생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하거나, 임신은 했으나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로 신체가 변형되어 출산 시 고통을 겪거나 사망한다거나, 봉합으로 인해 생리혈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여 심각한 복부감염이 일어나는 등, 여성 성기절제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증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인권 침해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도 문화상대주의라는 명분아래 존중받아야 하는가? “그들의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해당 문화권에서 여성 성기절제라는 행위는 여성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여성의 성적 순결성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판적 문화

8) 여성 성기절제와 그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Susie Costello et al.,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Preventing Female Genital Cutting (FGC),”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 45, (2019), pp. 1259-1276; Lisa Wade, “The Politics of Acculturation: Female Genital Cutting and the Challenges of Building Multicultural Democracies,” *Social Problems*, vol. 58, no. 4, (2011), pp. 518-537; Mary Nyangweso, *Female Genital Cutting in Industrialized Countries: Mutilation or Cultural Tradition?*, (Santa Barbara: Praeger, 2014).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는 존중할만한 가치가 있되, 문화에 대한 존중은 결코 인간보편윤리(Universal Human Ethics)보다 상위에 있지 않음을 역설한다. 즉, 생명의 존엄성, 선택의 자유, 인권 등 문화를 뛰어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누군가에게 폭력과 피해를 가하는 행위는 문화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판적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보편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문화는 이해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 2. 절대적 문화상대주의

절대적 문화상대주의(Absolute Cultural Relativism)는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앞서 설명한 문화상대주의의 기본자세, 즉 해당문화의 구성원의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앞서 언급한 여성 성기절제를 예로 들어보자. 해당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전통이라면 이것을 외부인의 시각에서 야만적이거나 무지한 행위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적 문화상대주의는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것일까?

절대적 문화상대주의를 인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입장으로 보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이해이다. 절대적 문화상대주의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성이라는 이름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자문화 중심적 시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류 보편윤리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 규정되는가? 인권, 생명존중, 개인의 선택자유 등은 모두 고귀한 가치로 생각되지만, 어디까지가 인권보호의 범주이고 어디까지가 생명존중의 범위인지에 대한 인류 보편적 합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권력을 가진 집단,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구 근대성에 기반한 가치들이 인류 보편성이라는 미명 하에 다른 집단에게 강요될 위험이 있으며, 그 또한

자문화 중심적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sup>9)</sup>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다는 명제에는 누구나 찬성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의 예를 생각해보자.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져 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하고 아무런 감정과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의 환자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은 계속되는 연명치료일까 아니면 고통을 줄이는 안락사일까? 아무런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의 심장을 여러 의료장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뛰게 하는 것이 과연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지, 그것이 그 사람의 존엄한 삶을 지키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맞설 것이다. 즉, 절대적 문화상대주의는 인류보편윤리라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상대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그에 비해 문화상대주의의 가치가 하위에 있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절대적 문화상대주의의 시각은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권력의 우위에 있는 집단의 가치가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공존의 방식과 가치를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 Ⅲ. 공존을 바라보는 시각: 과정적 접근

공존이 서로 문화가 다른 집단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을 통해 이해할

<sup>9)</sup> Alison Dendes Renteln, *International Human Rights: Universalism Versus Relativism*, (New Orleans: Quid Pro, 2013), pp. 83-84.

수 있다면, 다음으로는 공존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존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상태를 향한 과정을 말하는 것인가? 폭력은 없으나 교류는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유용한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존을 이야기할 때 전제되는 최소한의 조건은 서로 위해의 의도가 없거나, 아니면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서로 얽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를 공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폭력의 부재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공존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평화와의 연결고리를 찾게 된다. 공존을 평화의 개념과 연결시켜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이 없는 경우를 소극적 평화, 상호교류와 통합이 일어나는 공존을 적극적 평화의 맥락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이론에서의 기본적 조건을 적용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눈에 띈다. 물리적 폭력이 현재는 중지된 상황이라 해도 그 지속기간이나 종결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합의나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방향성을 선불리 가늠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기존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 사회(post-conflict society)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중재 또는 합의에 의해 공존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도, 그 저면에 위해의 의도나 행동이 조성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공존은 소극적 평화로서의 공존과 적극적 평화로서의 공존이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과정적 접근(processual approach)을 통해 이해할 때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단계와 방향성을 짚어나가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물리적

폭력은 제거된 상태이지만 다른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상호존중과 합의에 기반하여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공유가 일상화된 상태로 향하는 일련의 스펙트럼을 상정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공존의 형태와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다. 공존을 단면적 현상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과정으로 파악한다면 사실상 많은 국가와 사회들이 상황과 정책에 따라 이 스펙트럼 상에서 방향을 달리하여 움직이거나 혹은 한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해가는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 공존의 보다 완성된 형태로 화해(reconciliation)을 들기도 한다.<sup>11)</sup> 공존의 다양한 모습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IV. 공존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 통합과 부과

공존을 과정적 접근으로 본다고 할 때, 공존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공존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에

10) Janel B. Galvanek and Katrin Planta, *Peaceful Coexistence?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 (Berlin: Berghof Foundation Operations, 2017), p. 41.

11) Azra Hromazic, "'Smoking Doesn't Kill; It Unites!'" Cultural Meanings and Practices of "Mixing" at the Gymnasium Mostar in Bosnia nad Herzegovina" In Claire McGlynn et al, eds., *Peace Education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Comparative Perspectiv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p. 122; Michael Ignatieff, "Afterwords: Reflections on Coexistence," In Antonia Chayes and Martha Minow, eds., *Imagine Coexistence: Restoring Humanity After Violent Ethnic Conflict*,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p. 325.

대해 크리스버그는 집단 간 통합의 정도(degree of inter-communal integration)와 일방에 의한 부과 정도(degree of unilateral imposition)를 두 축으로 하여 아래의 표를 제시한 바 있다.<sup>12)</sup> 즉, 적당한 수준의 통합을 보이면서 일방에 의한 부과가 심각하게 크지 않을 때를 의미 있는 공존의 상태로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집단 간 관계의 형태와 차원<sup>13)</sup>

부과의 정도	통합의 정도		
	낮음	보통	높음
일방적이고 극심	추방 분리 직접 식민지배	아파트헤이트	노예제
양방적이고 보통	간접 식민지배	지배 격리 우위	강제적인 동화
상호적이고 거의 없음	합의된 분리	자치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자유로운 동화

## 1. 통합의 정도

통합의 영역을 세분화한다면 제도, 문화, 정체성 등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으나, 집단 간 통합의 정도는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며 공존하고는 있으나 교류가 차단된 사회, 즉 주거지가 구분되고 집단 간 경제적, 사회적 활동 역시 각

<sup>12)</sup> Louis Kriesberg, "Changing Forms of Coexistence," In Mohammed Abu-Nimer, ed., *Reconciliation, Justice, and Coexistence: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Lexington Books, 2001), p. 49.

<sup>13)</sup> *ibid.*, p. 50의 표.

기 구분된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라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는 매우 미미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제도, 문화, 정체성의 통합 정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집단 간 상호작용의 빈도와 범위는 각 집단의 종교, 문화, 종족성 등이 서로 얼마나 수용가능한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수용성은 앞서 설명한 문화상대주의적 태도가 구성원 개개인과 사회 전반에 얼마나 내재되어있는가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기존의 공통분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족적으로 유사한 경우, 혹은 서로 종족적으로는 확연히 구분되지만 같은 자연환경에서 생활양식을 공유해 온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서로에 대한 수용성은 높아질 여지가 크다.

## 2. 일방에 의한 부과 정도

일방에 의한 부과 역시 제도,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수적으로 일방이 우세한 경우, 정치적으로 일방이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일방이 우위에 있는 경우, 군사적으로 일방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에 두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층위에서 일방의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때는 의미 있는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식민주의에서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함께 시공간을 공유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존의 형태로 보기보다는 착취와 억압,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은 일방에 의한 부과가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방에 의한 부과의 극단은 강제된 동화이며, 강제된 동화는 기본적으로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공존과 정반대 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방에 의한 부과 정

도는 억압, 배제, 심지어는 추방까지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평화와 연관된 여러 가치 중 공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 V. 공존의 방식: 공유, 인정, 보상

공존의 형태가 통합과 일방에 의한 부과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러한 형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목적에 따라 공존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공존의 형태가 형식적인 구분을 가능케 한다면, 공존의 방식은 공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내용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공유, 인정, 보상에 초점을 맞춘 공존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1. 집단 간 권력공유(power-sharing among groups)

권력 공유는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 영역에서의 권력을 언어, 종교, 종족 등으로 구분되는 집단 간에 나누는 것을 제도화한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집단 간의 대화와 합의가 선행되고 협정 등의 형태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권력 공유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지는데, 연합 혹은 공동 민주주의(*consociational/communalist democracy*)와 합의 혹은 통합 민주주의(*consensual/integrative democracy*)가 이에 해당한다.<sup>14)</sup> 두 가지의 민주주의 모두 공존을 지향하기 위해 권력공유를

<sup>14)</sup> Christine Bell, *Political Power-sharing and Inclusion: Peace and Transition Processes*,

활용하지만, 전자는 종족이나 종교 등으로 분할된 집단들의 정체성을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주요 집단들을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후자는 종족이나 종교집단들이 지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계하여 다종족, 다집단 국가의 형태가 아닌 동맹의 형태를 지향한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민주주의들은 현실 정치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 훨씬 모호하거나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권력공유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양한 집단의 평화적 공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정치체제의 구조, 사회적 의견, 이미 존재하는 집단 간 갈등의 성격과 범위, 집단 내 정치관계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권력공유의 실효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보다 부정적인 경우, 권력공유에 대한 반향으로 인해 기존의 갈등이 더 심화되기도 한다. 특히 집단 간 갈등이 무력으로 표출되는 사회에서 권력공유를 통해 공존을 모색할 경우, 폭력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권력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 대중보다는 엘리트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sup>15)</sup>

## 2.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문화를 지닌 집단이 차별을 겪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집단은 대개는 언어, 신앙, 관습, 의식주 등을 공유하며 종족 혹은 문화 정체성을 갖는 무리를 가리킨다. 현실에서 다문화주의는 주류 사회에 편입된 이민자 문화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호되거나 혹은 통합

---

(Edinburgh: Political Settlements Research Programme, 2018).

15) *ibid.*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문화주의의 예로는 캐나다, 호주 등이 종종 사례로 언급되나 그 성취도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공식 정책상으로 다양한 문화를 지닌 집단과 커뮤니티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표방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에서 그 정책이 작동하는 기제, 그리고 사회전반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등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다문화주의를 달성한 경우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sup>16)</sup>

다문화주의는 강한 형태의 다문화주의와 약한 형태의 다문화주의로 나뉘기도 하는데, 전자는 사적인 영역 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문화의 다양성이 공식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후자는 사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의 발현은 인정하지만 공식영역에서는 주류문화에의 동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공존의 시각에서 보자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역사와 문화, 사회경제적 조건이 서로 다른 집단이 모두 동등한 수준에서 인정받고 교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향이라면, 다문화주의에서 현실적으로 눈여겨 봐야할 것은 법제화된 기회보장과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수적으로 다수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수집단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회보장과 지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사회가 어느 정도 소수집단에 대해 열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공존의 가치를 함양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 법제화의 경우 제도화된 수치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그러한 제도와 법의 수혜정도를

<sup>16)</sup> Catherine Frost, "How Canada Killed Multiculturalism," *Canadian Ethnic Studies*, vol. 43, issue 1/2, 2011, pp. 253~264.

<sup>17)</sup> 더 자세한 논의는 Alejandro Portes, "Introduction: The Debates and Significance of Immigrant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vol.1, no.3, (2001), pp. 181~194.

질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의 경우, 소수집단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와 수용도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에 더해 타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가 공교육을 통해 확산되는 정도를 가늠해야 한다. 최근에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도 상호존중에 기반한 공존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3. 자치주의(autonomy)

자치주의는 언어, 종교, 종족성에 있어 타 집단과 구분되며 특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주거를 함께 하며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다스릴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 안에서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에 대해 흔히 자치주 혹은 자치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명칭이 반드시 자치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신장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광시좡족, 닝샤후이족의 다섯 개 자치구를 가지고 있으나, 갈등과 충돌의 여러 사례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캐나다의 퀘벡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연방정부에 대해 다른 열 개의 주(province)와 동등한 정도의 자치권을 갖는다. 하지만 프랑스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며 프랑스권 문화에 대한 자의식이 높은 곳으로 흔히 “캐나다 속의 작은 프랑스”라고 여겨진다. 주 의회에 의해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정해진 바 있으며, 실제로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인구가 전체 90%에 육박하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프랑스 문화와 전통에 대한 보호와 보존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퀘벡의 주민의 대다수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프랑스인이나 캐나다인이 아닌 “퀘벡인(Quebecois)”로 표시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sup>18)</sup>

정치적, 혹은 문화적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이 연방 정부 및 다른 주들과 안정된 공존의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이는 종종 독립의 요구로 이어지며 대외적 뿐 아니라 자치지역 내부에서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 자치권을 주장하는 집단에서는 자치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독립의 선결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연방정부는 자치권을 인정하는데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가 많다.

#### 4. 적극행동(affirmative action)

차별을 폐지하고 불평등을 구제하기 위한 미국의 법적조치로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특별조치 11246을 통해 정부가 고용에 있어 인종, 종교,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적극 행동”을 취할 것을 명한 데서 시작되었다. 후에 차별의 요인에 젠더가 추가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연방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차별을 금지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집단에 대해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구제조치를 취하는 행동까지를 적극행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채용쿼터제 등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흑인 학생의 경우 대학입학사정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백인 학생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의 적극행동을 두고 여러 차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있었으며, 적극행동이 역차별의 기제로 사용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노예제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사회구조적으로

<sup>18)</sup> Leigh Oakes and Jane Warren, *Language, Citizenship, and Identity in Quebec*,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 흑인들에 대해 가산점을 주거나 백인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그 차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적극행동의 결과로 역차별을 당하거나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무고한 백인이 발생한다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와 비슷한 논쟁은 한국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다를 바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입국하게 되면서 정착지원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대학입학과 관련된 혜택이다.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에 취업이 어려워진 사회적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학입학에서 받게 되는 혜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학입학과 취업에서의 혜택은 남한 사회에서 소수자에 머물고 있는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공존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제도로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공존과 공정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 Ⅵ. 평화의 다른 가치들과 공존의 연관성

의미 있는 공존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과정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과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론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도 한다.

우선 공존의 기본 개념으로 서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를 상정한 것에서 나타나듯, 폭력이 없는 비폭력 상태는 서로 다른 집단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이나 내전의 공포 속에 고의적인 인명살상이 일어나는 상태는 공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폭력이라는 시작점을 지나고 나면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공존을 고민하는 사회들은 이미 그 안에 갈등요인이 오랜 기간 존재해 온 경우가 많다. 폭력은 멈춘 상태이지만, 서로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대끼리 원만한 합의에 바로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이미 갈등이 상당했던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화해, 혹은 이행기정의의 시도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즉 충돌은 자제하고 있지만 그 비폭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인정의 움직임이 요구되는 것이다.<sup>19)</sup> 물론 화해의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 우리만큼 저들도 평화를 바랄 것이라는 짐작, 우리와의 약속을 저들이 지킬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우리도 저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갈 때, 그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며 궁극적으로는 서로 수긍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합의는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서로 다른 집단이 오랜 기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해도, 각 집단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미 이루어진 합의를 재고하거나 폐기하는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도출된

19) Huma Haider, "(Re)imagining Coexistence: Striving for Sustainable Return, Reintegration and Reconcilia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ol. 3, (2009), p. 93.

합의안이 어느 일방에 공정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 합의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정성이 부재한, 한쪽에 부당한 강요와 강제가 포함된 내용은 비록 그 외연이 합의의 형식을 띠고 해도 진정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합의를 통해 얻어진 내용이 내부적,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지속되기 어려워질 때,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면 공존의 조건은 어느 정도 강화될 수 있다. 각 집단 내부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표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제도화되어있다면 합의로 이룬 성과가 막무가내로 무효화되는 위험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와 더불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동화가 아닌 통합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평화롭고 의미 있는 공존의 상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VII. 공존의 실천: 공존의 현실적 사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존의 그 형태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공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에서 드러나는 공존의 상황을 통해 공존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 역시 필요하다. 특히 공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제 사례의 경우, 공존의 실천을 위한 조건과 요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과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두 사례는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공존의 현실적 상황의 다양한 층위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집단 간 정치경제적 조건에 더해 인식론적인 차원에서의 외연적 범주와 내면적 범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겪게 되는 사회적 공존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반면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정치적 갈등 및 폭력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지니는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공존의 형태와 방식과는 별개로, 공존의 실천을 위해 상대 집단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과 역사적 기억과 경험에 대한 화해와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1.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이미 2016년 하반기에 3만 명을 넘어섰다. 물론 전체 인구에 비하면 수적으로 작은 집단에 속하지만, 여러 지원정책과 미디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논의와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대다수의 남한주민들의 인식 속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주민으로 포함되어 남한 입국과 동시에 그 법적지위를 인정받지만, 실제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적대세력으로 규정된 사회주의 체제 출신으로 인식되어 입국의 의도와 경로 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사회문화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문화전통을 향유해 온 한민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분단기간 동안 남한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 온 북한의 사회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생활습관을 지닌 존재로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언어적인 면을 예로 보자면,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통역 없이

완벽한 소통이 가능한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특유의 억양과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남한 주민과는 문화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집단이기도 한 것이다.

완전히 같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애매한 위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도 양가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북한주민이라는 추상적 범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막연한 동질성을 느끼지만, 막상 남한 사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동질성보다는 이질감을 더 느낀다거나, 나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거리감에 대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북한이탈주민을 조선족이나 동남아인과 같은 타민족 이주자 집단에 비해서는 가깝게 생각하지만, 막상 동업상대자나 결혼상대자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리감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막연한 정서적 거리감에서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이들을 “공정하지 않은” 혜택을 받아 남한 주민인 나의 생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불편한 경쟁상대로 인식하여 배타적이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으로 포용하려는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교육, 직업교육과 취업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

<sup>20)</sup>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정동준 외 공저,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pp. 167-169.

로 만족할만한 공존의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다문화주의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존중과 포용, 이해와 교류에 기반하고 있을 때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공존의 가치가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남한주민에게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포용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상호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그들이 나서 자라고 교육받아왔던 환경과는 매우 다른 남한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남한주민들을 향해서도 배척하거나 비판적인 태도 대신, 인정과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으로 공존의 형태는 갖출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할 때,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아일랜드 공화국으로의 통합을 원하는 민족주의자(nationalist)와 영국령을 유지하기 원하는 합병주의자(unionist) 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갈등과 무장 폭력을 겪어 왔다.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약 30여 년 간 지속된 이 분쟁 사태는 민족주의 진영이 대부분 구교이고 합병주의 진영의 대다수는 신교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갈등이 아닌 민족/종족적, 정치적 갈등의 성격을 지닌다.<sup>21)</sup>

북아일랜드 갈등은 민족주의자와 합병주의자 양측 무장 세력들의 계속된 충돌로 말미암아 비정기적 혹은 낮은 수준의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21) 북아일랜드 갈등은 “The Troubles”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갈등은 일반인 1,840명을 포함해 총 3,5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남겼으며, 갈등과 연관된 폭탄테러에 의해 북아일랜드 내에서는 물론, 영국과 유럽지역에서까지 사회 기반시설이 파괴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 외에도 계속된 충돌과 긴장상태로 인해 특히 어린이와 젊은 층이 정신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갈등 기간 동안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영국군이 파견되었고, 이들의 개입과 함께 “평화의 벽(Peace Wall)”으로 알려진, 구교와 신교 거주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장벽들이 세워졌다.

오랜 갈등과 분쟁 끝에 양측은 1998년 성금요일 협정으로 잘 알려진 벨파스트 협정(Belfast Agreement)을 맺는데 성공하였고 이는 종종 합의의 통한 평화협정과 공존의 상징으로 거론된다. 이 협정의 내용은 권력 공유에 기반한 자치정부 설립과 구교도를 50%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경찰조직의 대대적 개편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협정 이후에도 양측의 무력 충돌은 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IRA)이 무장투쟁 포기를 선언한 2005년까지 끊임없이 계속 되었다. 아일랜드 공화국군의 비무장화 이후 무력충돌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그렇다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교도와 신교도의 거주지를 분리하는 장벽들은 협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고하게 세워졌고, 협정 후 8년이 지난 2007년이 되어서야 민족주의자와 연합주의자 양측 정당이 권력을 공유하는 북아일랜드 공동자치정부가 기능을 하게 되었다.<sup>22)</sup>

북아일랜드 갈등의 사례는 공존을 구성하는 다층적인 측면을 잘 보여준다. 대화에 의한 합의로 평화협정을 이끌어냈지만, 권력공유에 기반한

22) 북아일랜드 갈등의 역사적 맥락과 평화협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구갑우, “아일랜드섬 평화협정 20년: 아일랜드섬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찬수 외 공저, 『세계의 분쟁: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들』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9), pp. 23~244.

자치정부 설립과 같은 제도의 실행은 합의 이후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자면 상호 비폭력, 권력공유와 같은 공존의 조건들이 마련되었으나, 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둔,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생활과 인식 상에서의 공존은 그보다 훨씬 뒤쳐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의견이 다른 집단들 간에는 여전히 콘크리트와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흉물스러운 장벽들이 “평화의 벽”이라는 모순적인 이름을 지닌 채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구교도와 신교도는 주거 뿐 아니라 교육, 상업, 문화활동 등에서 서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유럽연합에서의 영국 탈퇴(Brexit)를 둘러싼 움직임은 북아일랜드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민족주의자와 합병주의자 사이의 평화적 공존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존을 협정과 제도로 재단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삶과 의식 안에 상대의 자리를 인정하는 방식의 공존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협정과 제도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젊은 층의 의식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교와 신교 사이의 역사 및 종교에 대한 통합교육과 같은 장기적 시도가 이루어질 때, 북아일랜드에서의 공존은 한층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해질 것이다.<sup>23)</sup>

---

<sup>23)</sup> Shelley McKeown, “Social Psychology and Peacebuilding,” In Roger Mac Ginty, ed., *Routledge Handbook of Peacebuilding*,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3), pp. 125~126; Anthony Oberschall, “History and Peacebuilding,” *ibid.*, p. 179.

## VIII. 평화를 향한 공존: 지향에서 실천으로

공존이라고 하면, 특히나 평화적 공존이라고 하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상황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존은 기회부여, 대표성 보장, 상호 이해와 존중, 협력과 교류 등의 여러 측면과 층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물론 이상적인 수준의 평화적 공존을 하나의 지향으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공존의 진정한 가치는 그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있다기보다 그 곳을 향해 지난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실천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평화와 연결되는 가치로서의 공존을 이해하는데 있어 과정적, 실천적 접근이 필요함을 공존의 형태, 방식과 현실사례를 통해 진단해 보았다.

당장 전쟁이나 내전을 벌이고는 있지 않지만 서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의 공존에서, 합의는 쉽지 않지만 대화의 통로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더 나아가 모든 이가 같은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으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단계로,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공존의 가치가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대화, 화해, 합의, 신뢰, 공정성,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의 여러 가치가 지니는 상호 연관성은 매우 중요하다.<sup>24)</sup> 북아일랜드에 세워진 “평화의 벽”에서 상징적으로 보이듯, 장벽을 세움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평화는 제한적이며

<sup>24)</sup> Louis Kriesberg, “Changing Forms of Coexistence,” In Mohammed Abu-Nimer, ed., *Reconciliation, Justice, and Coexistence: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Lexington Books, 2001), p. 63; Merav Moshe, “Peacebuilding: A Conceptu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0 (2001), p. 19.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평화를 향한 공존의 모색에서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조건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열린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의식에 있어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나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 및 합의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갖춰질 때 공존의 실천은 더욱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상적 지향이 아니라 실천적 지표로서의 함의를 지닐 것이다.

■ 접수: 2019년 10월 31일 / 심사: 2019년 12월 10일 / 게재확정: 2019년 12월 11일

**【참고문헌】**

- 구갑우. “아일랜드섬 평화협정 20년: 아일랜드섬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 까?.” 이찬수 외 공저, 『세계의 분쟁: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들』.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9, pp. 23~244.
- 정동준 외 공저.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 Bell, Christine. *Political Power-sharing and Inclusion: Peace and Transition Processes*. Edinburgh: Political Settlements Research Programme, 2018.
- Booth, Ken. “Step towards Stable Peace in Europe: A Theory and Practice of Coexistence.” *International Affairs*, vol. 66, no. 1 (1990), pp. 17~45.
- Brown, M. Ann. “Anthropology and Peacebuilding.” In Roger Mac Ginty, ed., *Routledge Handbook of Peacebuilding*.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3, pp. 13~146.
- Costello, Susie et al.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Preventing Female Genital Cutting(FGC).”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 45, (2019), pp. 1259~1276.
- Douglas, Mary. *Purity and Danger*.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2.
- Frost, Catherine. “How Canada Killed Multiculturalism.” *Canadian Ethnic Studies*, vol. 43, issue 1/2, 2011, pp. 253~264.
- Galvanek, Janel B. and Katrin Planta. *Peaceful Coexistence?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 Berlin: Berghof Foundation Operations, 2017.
- Haider, Huma. “(Re)imagining Coexistence: Striving for Sustainable Return, Reintegration and Reconcilia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ol. 3, (2009), pp. 91~113.
- Hromazic, Azra. ““Smoking Doesn’t Kill; It Unites!” Cultural Meanings and Practices of “Mixing” at the Gymnasium Mostar in Bosnia nad Herzegovina.” In Claire McGlynn et al, eds., *Peace Education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Comparative Perspectiv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pp. 109~126.
- Ignatieff, Michael. “Afterwords: Reflections on Coexistence.” In Antonia Chayes and Martha Minow, eds., *Imagine Coexistence: Restoring Humanity After Violent Ethnic Conflict*.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pp. 325~334.

- Kriesberg, Louis, "Changing Forms of Coexistence." In Mohammed Abu-Nimer, ed., *Reconciliation, Justice, and Coexistence: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Lexington Books, 2001, pp. 47~64.
- Li, Xiaorong. "A Cultural Critique of Cultural Relativism."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66, no.1, (2007), pp. 151~172.
- McKeown, Shelley. "Social Psychology and Peacebuilding." In Roger Mac Ginty, ed., *Routledge Handbook of Peacebuilding*.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3, pp. 117~131.
- Moshe, Merav. "Peacebuilding: A Conceptu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0 (2001), pp. 14~26.
- Nyangweso, Mary. *Female Genital Cutting in Industrialized Countries: Mutilation or Cultural Tradition?* Santa Barbara: Praeger, 2014.
- Oakes, Leigh and Jane Warren. *Language, Citizenship, and Identity in Quebec*.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 Oberschall, Anthony. "History and Peacebuilding." In Roger Mac Ginty, ed., *Routledge Handbook of Peacebuilding*.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3, pp. 171~182.
- Portes, Alejandro. "Introduction: The Debates and Significance of Immigrant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vol.1, no.3, (2001), pp. 181~194.
- Renteln, Alison Den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Universalism Versus Relativism*. New Orleans: Quid Pro, 2013, pp. 83~84.
- Wade, Lisa. "The Politics of Acculturation: Female Genital Cutting and the Challenges of Building Multicultural Democracies." *Social Problems*. vol. 58, no. 4, (2011), pp. 518~537.
- Weiner, Eugene, ed., *The Handbook of Interethnic Coexistence*. New York: Continuum, 1998.

To Be (Together) or Not To Be (Together)  
: Toward Active Peaceful Coexistence

Chun, Kyung Hy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oexistence refers to a state that both parties share time and space without having intention to do harm to each other. As oppose to popular thoughts, coexistence does not always mean the ideal state in which conflicts and problems are all resolved to yield a peaceful situation that satisfies everybody. In reality, coexistence takes diverse forms on different levels and aspects such as endowment of opportunity,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cooperation and exchange. Power-sharing and political autonomy are examples of mechanisms and structures that allows coexistence among groups with different interests and intentions. To achieve a meaningful circumstance for coexistence, not only institutionalized form of agreement and treaties, but also respect and tolerance on perceptual level need to be pursued. The Troubles, an ethno-nationalist conflict in Northern Ireland during the late 20th century, is considered as having had a platform for non-violent coexistence with the Belfast (Good Friday) agreement of 1998 which envisaged an establishment of power-sharing government. Even after the agreement and the political development afterward, though, the catholic and the protestant, or the nationalists and the unionists are still

living a segregated lives fenced with heavy concrete walls topped with sparky wires. Different forms of coexistence constitute a spectrum rather than an ideal goal, and the genuine value of coexistence lies in the actual process of pursuing the goal, sometimes slow but steady.

Keywords: coexistence, cultural relativism, integration, power-sharing, The Troubles(Northern Ireland Conflict)

천경효(CHUN, Kyung Hyo)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인류학 석사학위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박사 후 연구원,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단일민족과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북한 바라보기: 고정된 역사 속에서의 타자화 현상을 중심으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과 공공기억,” “Site for Multivocality: Locating Overseas North Korean Defectors,” “통제된 다양성: 베트남 소수민족과 민족학박물관” 등이 있다.